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2과-24947
등록일자	2015.7.21.
결재일자	2015.7.21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지방소득세4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	
박성호	최종권	김광수	전결 07/21 문경수		
협조자	지방소득세2팀장 지방소득세3팀장 지방소득세1팀장	윤미라 김태영 이덕배	세입관리팀장 지방소득세5팀장	이정현 표지영	

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

2015년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과징계획



2015. 7. .

강 남 구
(세 무 2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세법 제75조 【납세의무자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규모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. • 지방세법 제79조 【징수방법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균등분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1일로 하며, 납기는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.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경위 : 2015년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부과 징수 계획 (서울시 세무과-16032 / 2015.7.15.)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사항무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사항무 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 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(0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/table> <p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0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0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0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0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0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0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시에서 내려준 업무처리 내용을 토대로 타구청의 주민세 과징계획 비교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사항무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015년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과징계획

주민세(균등분)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해소하며, 각종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주민세(균등분) 부과 개요

■ 징수목표액 : 49억원 (전년:48억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(예상)	2014	2013	2012	2011
부 과	6,036	5,906	5,792	5,601	5,526
징 수	4,984	4,867	4,761	4,668	4,588
징 수 율	82.6%	82.4%	82.2%	83.3%	83.0%

■ 납세의무자

-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

■ 과세기준일 : 2015. 8. 1.

■ 납 부 기 간 : 2015. 8. 16. ~ 8. 31.

■ 세 액

- 개인(세대주) : 4,800원, 개인사업자 : 50,000원, 법인 : 50,000 ~ 500,000원

※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액의 25%.

※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.

II 중 점 추 진 사 항

-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부과에 정확성 기여와 우편번호(5자리 변경) 정비로 납세고지서 정확한 송달
- 현수막, 입간판, 지역 언론, 반상회보, 구청홈페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 강화
- 자동이체 세액공제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 제공 및 지방세 미환급금을 주민세(균등분)에 사전 공제하여 징수율 제고

III 추 진 기 간

- 과세자료 조사 • 수정 및 보완 : 2015. 7. 13. ~ 8. 5.
- 고지서 인쇄 및 송달 : 2015. 8. 9. ~ 8. 14.
- 납세홍보 : 2015. 8. 10. ~ 8. 31.

IV 세 부 추 진 사 항

1 개인 균등분

- 과세대상 : 과세기준일(매년 8.1)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
- 과세자료 확인 조사 정비 (각 동 주민등록담당 협조사항)
 - 주민등록망에 의거 전세대 파악
 - 무단전출자, 무단전입자 사실조사
 - 과세기준일 전출입사항 정리철저 : 당일접수분은 당일처리(8월1일까지)
※ 8월 1일 전입자는 전입지 관할자치구에서 당해연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
- 비과세 대상 확대
<종전> 기초생활수급자 → <변경>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+ 의료급여수급자

② 개인사업자 균등분

■ 과세대상

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)이 4,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

③ 법인 균등분

■ 과세대상

-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
(지점, 지사, 영업소, 분소, 출장소, 직매장, 공사 현장사무소 등 포함)
- 영리법인, 비영리법인, 내국법인, 외국법인을 불문하고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과세대상

V 납 세 편 의 시 책

■ 주요 납세 편의 시책

-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
 -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(CD/ATM)기를 통하여
 - 국내 22개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민세 납부가능
-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
 -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 또는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납부
 - 은행, 증권, 보험회사 등 지점별 다량으로 부과한 납세자의 일괄납부 처리가능
-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
 -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외환은행, 우체국, 씨티은행, 농협은행 등 9개 기관
 -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
 - ※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

-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주민세 전자고지
 -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
 - 납기 내 납부된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
 -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, 사회복지단체 기부, 교통카드 충전가능
-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신청납부
 - 자동이체 납부 신청기한 : 2015. 08. 26. (24시 기준)
-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
 - 대상 편의점 : CU, GS25, 세븐일레븐, 바이더웨이, 미니스톱
 - 현금카드(우리은행, 신한은행 외는 이체수수료 발생)는 전은행이 가능
 - 신용카드는 우리BC, 삼성, 현대, 롯데, 외환카드만 가능함
-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
 - 앱스토어, 구글 play스토아에서 “서울시세금납부” 어플 설치후 납부
 - 우리은행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
-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 발송
 - 대상 외국어 : 영어, 중국어, 일어, 불어 (4개언어)
- ARS를 이용한 납부서비스
 - ARS전용전화(☎1599-3900)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
 - 계좌이체 : 우리은행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

VI 징수율 제고 방안

■ 납세홍보

시	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내 전광판,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▶ 서울시홈페이지 홍보, ETAX 홍보 ▶ 대변인을 통한 언론보도자료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민센터 행정차량용 현수막 제작(신규), 포스터 게시 ▶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소식지 납부안내 ▶ 아파트 자체 납부 안내방송 실시

● 차량용 현수막 제작

- 주민센터 행정용 차량으로 가두 방송시 소음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행정차량에 맞는 현수막을 제작·부착하여 납부 홍보(8.16.~8.18.)

● 아파트 단지 방송 협조 : 2015.8.29. ~ 2015.8.30.

■ 미환급금 사전 총당제

● 지방세법 제76조 제5항(2012.12.31 신설) 및 제6항

-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전 총당시 동의가 필요하나, 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,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체납에 한하여 총당할 수 있음.

● 세부사항

- 총당기준 : 미환급금 중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총당
- 총당할 미환급금의 기준 : 환급발생후 6개월이 경과하고 3만원 이하
 - ※ 법인, 공동소유자 등 제외
- 총당순서
 - 부과금액보다 미환급금이 많을 경우 환부결의 일자순으로 총당하고 나머지 미환급금은 안내
 - 부과 건이 여러 건일 경우 부과금액이 작은 것부터 총당

VII 주요 추진 일정 및 행정 사항

■ 주요 부과처리 추진일정 : 별첨참조

■ 주민세(균등분) 직원교육실시

- 교육일자 : 2015. 07. 14.(화, 18시)
- 교육내용 : 균등분개요와 업무숙지사항, 민원응대방법, 정비방법, 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내용

■ 홍보 배너기 제작 (규격:가로 60cm X 세로 180cm)

■ 업무협조부서 공문시행

- 주민자치센터 : 납세홍보 및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 철저 협조요청
- 주택과 :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
- 건축과 : 법인균등분 과세관련 견본주택등 자료제출 협조요청
- 전산정보과 : 주민등록 전산자료 전송 및 납세홍보 협조요청
- 공 보 실 : 납부안내 홍보요청
- 세무관리과 : 미환급금 사전충당 완료토록 협조요청
- 우리구가 본점인 법인에 대한 서울시내지점현황 파악 협조공문시행

■ 각종 보고기일 준수

- 과세사항 점검표(체크리스트) 보고 : 2015. 8. 7.
- 2015년 정기분 주민세 과세현황 보고 : 2015. 8. 21.

[붙임] 정기분주민세(균등분) 부과처리일정(예정)

추진일정	주요업무	담당	처리여부
7.8	▶강남구청소식 2015년 8월호 홍보요청 시행	공보실	○
7.10	▶자치구 주민세 담당자 전산 교육	서울시	○
7.10~31	▶주민세 자료 조사 및 과세자료 정비 - 비과세감면자 확인 정리, 법인 대장 정비 등 ▶본점/사업장 정보 조사·등록, ▶환급 및 체납 자료 정리		
7.13	▶주민등록 자료정비 철저기안발송(1차) ▶미환급금 충당 업무협조시행 ▶건본주택 관리현황제출협조 시행 ▶공동주택관리사무소 현황제출협조 시행 ▶건축공사 현장사무소 현황제출협조 시행	동사무소 세무관리과 주택과 주택과 건축과	○ ○ ○ ○ ○
7.14	▶균등분 세무2과담당직원교육계획 내부결재 및 교육(균등분개요 및 사례중심)	세무2과직원	○
7.15	▶균등분 홍보 입간판 제작의뢰(배너기제작의뢰) *****	****	○
7.17	▶균등분 과세관련 본점 및 사업장 현황제출 공문 시행 및 우편발송	본점법인사업장	○
7.17	▶법무부 제공 외국인자료 등록	서울시	○
7.20~24	▶국세청 자료 세무종합 시스템에 구축(예정)		
7.20~31	▶주민세대장과 국세청자료 비교 자료정비 ▶국세청사업장대장과 비교 정비(휴·폐업정보 등) ▶외국인 세대주 자료 정비·등록, ▶각 대학별 대학생 현황 등록 : 최종 ▶주민세(종업원분)자료활용 50인초과 사업장 조사(당해년 5월신고자료 활용) ▶최근 3년간 균등분 감액자료 확인 및 과세대장 정비 ▶주택과, 건축과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자료정리		
7.21	▶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과징계획수립		
7.22~23	▶샘플 고지서 인쇄 및 바코드(우편번호) 검증	인쇄업체	
7.28	▶주민세(개인균등분) 과세관련 주민등록 자료정비 철저 (2차) 공문시행	동사무소	
8.2	▶주민등록전산자료 구축 (최종) ▶1차 과세제외 및 비과세 연계처리 (대학생,기초생활수급자,시각장애인 등) ▶최근 3년간 개군 감액자료 활용 외국인,군인,해외거주,현지이민자,수감자 정비	서울시	
8.3	▶주민망 주소의뢰(사군) ▶1차 정기분 세액계산 및 고지화일 생성 - 주소지,거소지,자동이체,체납액,등기번호, 가상계좌, 전자고지, 사전충당, 미환급액 작업을 통한 고지과일의 생성	서울시	
8.3~5	▶균등분 고지서 우편발송 관련서류 제출	동서울우편집중	
8.3~5	▶대장 오류자료 최종 정비(비과세 자료 등), ▶사군·법군 휴폐업 자료 정비		
8.5	▶확대간부회의 PPT 자료 준비		
8.3~5	▶주민망 주소의뢰 및 결과등록 ▶정기분 고지서 자치구 1차 검증 ▶국세청자료 원시자료와 매월국세청자료 정보 비교 7월중 휴폐업자료 비교하여 정비	서울시	
8.5~8.6(12시)	▶정기분 고지서 자치구 최종 검증, ▶기타주소 표기 제외 등록		
8.6(13시)~7	▶정기분 부과 최종 작업 및 고지파일 점검	서울시	
8.8~12	▶고지서 인쇄 및 송달	사·자치구	
8.8~10	▶정기분 과세과일 세액 등록-총괄과세,ETAX/WETAX등록,전자고지 등	서울시	
8.4	▶8월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납부안내 홍보 요청 옥외전광판, 구청홈페이지, 인터넷방송국, 무인발급기표찰등	공보실, 전산정보과, 민원여권과	
8.4	▶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출력현장 근무자 명단 제출		
8.11	▶주민세(균등분) 2014년 8월 정기분 결정결의서(행정동:전체)		
8.11~31	▶부과누락자료 사후 관리		
8.13	▶8월주민세(사군) 사망자부과에 따른가족관계증명서발급의뢰	민원여권과	
8.14	▶미환급금 충당결의-[결재관리 > 결정결의관리 > 결의상신 > 충당결정결의]		
8.21	▶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과세현황 보고		
8.25	▶납기내감액,부과누락등에 따른 균등분 수시부과 완료 ▶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일정별 점검표 작성 제출		
8.28	▶균등분 세목별 수시부과분 결정결의		
9.14	▶균등분 취소된 세액공제 추가결정결의(결의상신-세액공제분추가결정결의)		